

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6년 11월 13일

○ 회부일자 : 2006년 11월 13일

3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(2005.8.4)에 따라 동법률 제 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에서 규정한 ‘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’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「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」 구성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 기능을 대행(안 제3조제1항, 제2항, 제3항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
-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기금별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용토록 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안 제3조 「충청북도청소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」의 기능과 「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」의 기능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